

『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소비자보호법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소비자 피해 보상기준에 의한 요금 환불, 장애인, 국가유공자 감면
- 국민생활관 대인사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를 적의 조정 타지역 국민생활관 사용료와 형평성을 고려 현실에 맞게 조정

3. 주요내용

- 위탁운영 기간 개정
 - 3년(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연장) ⇒ “위탁기간은 제14조 (위탁운영의 철회)의 사유로 인한 위탁운영의 철회 시까지 유효하다”로 개정
- 장애인, 국가유공자 사용료 50% 감액 추가(안 제10조제2항)
- 사용료의 반환 신설(안 제10조의 1)
 - 시설보수로 인한 사용불가능 시 : 사용료전액+사용료의10%(배상금)
 - 개인의 부득이 한 사정상 사용 불가능 시 : 사용일 금액 및 월 사용료의 10% 공제 후 반환
- 사용료의 조정 ⇒ 13. 6 ~ 25% 인상(【별표1】 및 【별표3】)

4. 참고사항

- 장애인복지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86조
- 소비자보호법 및 재경부 고시 제2004-19호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
- 전국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사용료 대비표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생활관 운영에 따른 위탁기간 조정, 사용료 감면과 납부된 사용료 반환, 시설물 사용금액 조정 등 운영사항 일부를 개정된 관련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.
- 주요 개정내용은 위탁운영 기간을 「3년」에서 「조례 제14조의 사유로 인한 위탁운영의 철회시까지로」하고, 시설물 사용료의 50%감액 대상자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를 추가하였으며, 사용료의 반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. 또한, 국민생활관의 수영장 및 헬스장 등 시설물 사용료 일부를 물가상승 및 타지역과의 형평성등을 감안하여 13.6% ~ 25%까지 인상하는 내용입니다.
- 개정안 검토결과 재검토사항은 국민생활관의 수영장·헬스장 및 무대조명 등 부대시설 사용료 일부를 13.6% ~ 25%까지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운 경제여건등을 감안하여 인상여부를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.